■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14.11.4.>

[ ]마약류 ([ ]수입 [ ]수출 [ ]제조) [ ]한외마약 제조 품목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 참조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소의 명칭	업허가번호
	업소의 소재지	
	변경신청 제품명	품목허가번호

변경사항

항목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 신청사항	사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3. 변경을 증명하는 근거서류(수출품목은 제외)	수수료 - 수입·제조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금액 - 수출품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금액

처리기간

가. 제32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에 따릅니다.

나.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간에 따릅니다.

다.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품목

- 공정서에 실려 있지 않은 품목: 20일
- 공정서에 실려 있는 품목: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필요시 현장조사)	→	기안 결재	→	허가증 뒷면 기재	→	통보 및 발급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